

『火保法 施行令 改正』의 意味

지난 8월 18일에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의 施行令이 改正 公布되었다.

同 法律이 制定 公布된지도 於焉 10년이 지났으며 施行令 改正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금번의 施行令 改正은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 많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世界的인 自由競爭이란 물결을 타고 지난 81년부터 協會만이 取扱하고 있던 金融平을 保險業務의 段階의인 解體로 協會의 機構 縮小가 있었으며 앞으로 繼續하여 業務가 縮小된다면 “協會의 將來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防災業務는 어떻게 될 것이며, 保險業務는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좀더 솔직히 말하면 不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同 施行令을 改正함에 있어서 그 提案 說明에서 밝힌 바와 같이 協會는 保險業務의 縮小 以後에도 防災活動을 圓滑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財源 補填의 根據를 마련함에 있다고 하였다.

그 主要骨子を 보면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의 保險全額을 現實化하였고, 損害保險會社가 出捐하는 火保協會의 協會費를 共同引受保險料 收入의 100分の 20만 出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協會가 損害保險會社의 保險事故 輕減을 위하여 火災豫防活動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當該 保險料 收入의 100分の 5 範圍 안에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金額을 追加로 出捐토록 改正하였다.

이는 協會가 民間防災專門機關으로 誕生하여 10年間 國民의 人命과 財産保護를 위하여 科學的인 防災活動이란 大命題 아래 安全點檢과 調査, 研究, 教育, 弘報業務等에 獻身的인 努力을 기울인 結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改正內容을 分析해 보면 協會는 協會費를 出捐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것과 同時에 이에 대한 反對給付의 義務로서 損害保險會社의 保險事故輕減을 위하여 火災豫防活動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는 協會가 지금까지 7大都市를 中心으로 實施하고 있는 防災活動範圍를 넓혀 部分的이고 消極적이었던 對象地域外 保險對象物의 防災活動에도 積極적이고 廣範圍하게 參與토록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염려하던 防災活動範圍와 財源의 根據를 法的으로 保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改正施行令에서 賦課된 課題를 充實히 遂行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우리 周邊의 모든 防災業務를 다시 한번 整理하여 效果의으로 發展시키고 새로운 業務를 開拓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火保法 施行令 改正을 火協이 國家와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는 名實相符한 防災專門機關으로서의 確固한 基盤을 構築할 수 있는 契機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